

교내근로장학

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[학생 근로 제도](#)로,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

- 경비 지급 기준 : 아래 [시급](#) 기준 적용 (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)
- 자격 :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(휴학생, 대학원생 불가)
-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
-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

시급 적용

- [참조] [위키페이지 '최저임금'](#)

1. 2020년 기준 : 8,590원
2. 2021년 기준 : 8,720원